
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학생주거실태조사 제도 시행기반 마련 (안 제14조11항, 12항, 13항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주거 공간 부족 및 지속적인 주거비용 상승으로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안정적 학업 환경조성에 중요 장애요인으로 부각
-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주거실태 수립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정책 효율성 확보 및 추진정책의 신뢰도 제고

※ 근거법령 :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5('26.05.19. 일부개정)

나. 제 · 개정 내용

영조항	법조항	법률 위임사항	시행령(안) 주요 내용
제4조의11 (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조사내용 등)	제11조의5 제4항	조사대상 조사내용	- 정기·수시조사 구분: 정기조사(매년 4.1.) - 조사대상(학생·학부모) 및 조사내용 항목 규정(6개)
제4조의12 (조사의 절차 및 결과공개 등)	제11조의5 제4항	조사 절차 결과공개 절차	- 조사 방법: 서면·현장 및 온라인 조사 - 자료제출 요구, 조사결과 공개 방법 등
제4조의13 (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)	제11조의5 제3항	전문기관 지정 업무위탁	- 공공기관·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「고등교육법」 개정 취지를 반영한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세부내용과 추진 방법을 법률로 규정하여, 체계적 조사추진 및 조사자료의 신뢰성 확보.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